

동물검역소의 중요한 공지사항



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의해
2020년7월1일부터

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반입한 경우
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(법인에 대해서는 **최고5,000만엔**)

- ◆ **국제우편·택배편**으로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
- ◆ 동물검역소의 직원은 화물속에 **육제품 등의 축산물이 있는지를 검사**합니다.
- ◆ 위법반입된 육제품 등의 축산물은 원칙 **폐기**됩니다.
- ◆ 악질 수입사례에 관해서는 **경찰에 통보**하고 있습니다.
위법육제품등 축산물의 반입 등에 의해 **체포된 사람도 있습니다.**

